

<p>등학교는 1968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사전 도시계획상 학교로서 시설결정을 받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으나,</p> <p>○현재 학교가 현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황에 맞도록 시에서 제출한 결정안대로 학교시설을 결정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※중·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은 학교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면적보다 각각 24%, 71%가 초과되고 있음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465 954 533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6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 ○내용 · 용도지역 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69,9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 (69,900㎡)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논현동 129 일대 69,900㎡에 대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강남구에서 논현생활권 중심지로 결정하여 본 지역을 중심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, ○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곳 생활권 중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지구지정은 타당한 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	의안 번호	66		
의안 번호	66				
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<p>5. 심사결과 시 결정 및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			
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831 432 898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0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내용 · 자연녹지지역(고덕동 215-1) → 일반주거지역 603.1㎡ · 일반주거지역(고덕동 213, 213-1) → 자연녹지지역 603.1㎡ ·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일반주거지역, 공원 · 주민의견 청취 결과 : 없음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강동구 고덕동 213-1에 연대하여 있는 고덕 제1근린공원 안에 있는 기존 교회를 공원 외곽지로 이전함으로써 근린공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, ○공원 안에 있는 교회 이적지인 고덕동 213, 213-1의 일반주거지역(603.1㎡)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, 교회가 이전할 현재의 자연녹지 고덕동 215-1(603.1㎡)을 면적 변경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본 변경결정안은 근린공원 관리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	의안 번호	60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5 1518 954 1585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70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치 : 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○내용</p>	의안 번호	70
의안 번호	60				
의안 번호	70				

<p>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상업지역→일반주거지역 (4,08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삼성동 74 일대 경기고등학교 동측도로변 4,080㎡의 현재의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은 경기고등학교 부지이며 도로에 따라 길게 옹벽이 설치되어 상업지역으로 는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1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9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개포동 614 일대 6,900㎡의 현재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,</p> <p>○이 지역이 이미 건축된 개포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로서,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이 토지를 현실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타당한 변결결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2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	의안 번호	71	의안 번호	72	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용도지역변경: 준주거지역→일반주거지역 (6,100㎡)</p> 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강남구 일원동 626 일대 6,100㎡는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, 이미 건축되어진 삼성사원아파트 부지로서, 이미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현황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,</p> <p>○지역현실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류 (17건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: 오류2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오류2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: 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p>• 면 적: 12,888㎡(사유지 10,762㎡, 국·공유지 2,126㎡)</p> <p>• 건축물: 78동(유허가 66동, 무허가 12동)</p> <p>• 가구수: 226세대(가옥주 76, 세입자 150)</p> <p>• 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p> <p>• 주민동의율: 토지 77%, 건물 82%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18
의안 번호	71						
의안 번호	72						
의안 번호	18						